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0-85호

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25일
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소로	2	2	8	국지도로	641	신선동2가 160-108	신선동1가 271-6	일반도로	부고 제91호 (82.04.24.)	미집행 구간의 실효
변경	소로	2	2	8	국지도로	291	신선동2가 141-99	신선동1가 271-6	일반도로	부고 제91호 (82.04.24.)	-
폐지	소로	3	129	6	집산도로	90	봉래동 202-6 (중로1-6)	봉래동 207-4	일반도로	부고 제4호 (68.01.11.)	실효

나. 실효일자 : 2020. 10. 21.

다. 실효사유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1항 규정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됨.

라. 지형도면 : 게재 생략 (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)

마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설과(☏ 051-419-4632, 4714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